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4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4.

발 의 자 : 임종득·서천호·나경원
이준석·김예지·김기현
김정재·박정하·임이자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,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,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과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비료·사료·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, 이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·사료·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입·유통·판매 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 신설).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공급망 위험 대응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비료·사료·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입·유통·판매 가격과 물량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3조의2(공급망 위험 대응) 국</u> <u>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급망</u> <u>위험에 따른 비료·사료·농약</u> <u>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</u> <u>인한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</u> <u>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</u> <u>여 필수농자재의 수입·유통·</u> <u>판매 가격과 물량 등 현황에</u> <u>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</u> <u>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</u> <u>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</u> <u>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</u> <u>하여야 한다.</u></p>